

의안번호	제 127 호
의 결 연 월 일	2022년 월 일 (제 회)

2022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22년 10월 31일

2022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

의안 번호	127
----------	-----

제출연월일 : 2022. 10. 31.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금을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상기관: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 출연목적 및 필요성
 -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은 2000년 12월 29일 충북교육장학재단으로 설립되어 충청북도 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으며, 2022년 조례 제정을 통해 재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재단 명칭 및 정관을 변경하였음.
 -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이 2022년 9월 19일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으로 최초 지정·고시됨에 따라 그동안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운영비로 편성하여 지원해오던 재단의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하려는 것임.
 -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이 필요함.

○ 출연 예정금액: 179,000천원

○ 출연내역: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사업비

○ 기대효과

- 충북 도내 우수학생 조기발굴 및 성장 지원

- 다양하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실현

3. 의안전문: 불 입

4. 관계법령 발췌: 불 입

5. 기타

1 출연 심의요구서

주 관 부 서	유아특수복지과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학생복지팀	박을석	장병현	김은아	290-2783

기 관 명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 연 대 상	<input type="radio"/> 이 사 장: 이 광 우 <input type="radio"/> 일반현황: (소재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주요사업)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금 조성·관리사업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국제교류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저소득층학생 지원 사업 등																											
출 연 사 업 비	<input type="radio"/> 2022년 - 출연 예정금액: 179,000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천원)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2021년 예산액*</th> <th rowspan="2">2022년 예산액</th> <th colspan="5">재원별</th> </tr> <tr> <th>계</th> <th>국 고</th> <th>특 교</th> <th>도교육청</th> <th>기 타**</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150,000</td> <td>179,000</td> <td>179,000</td> <td>0</td> <td>0</td> <td>0</td> <td>179,000</td> </tr> </tbody> </table>							구분	2021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재원별					계	국 고	특 교	도교육청	기 타**	계	150,000	179,000	179,000	0	0	0	179,000
구분	2021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재원별																									
			계	국 고	특 교	도교육청	기 타**																					
계	150,000	179,000	179,000	0	0	0	179,000																					
	*2021년 예산액: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 충북교육장학재단지원(운영비) **기타: 교육금고지원협력사업비																											
출 연 필 요 성	<input type="radio"/>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하여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에 출연 필요																											
근 거·법 령	<input type="radio"/>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8조(출연금) 교육감은 재단의 목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p>지 도 감 독 부 서 의 건 (총 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이 2022년 9월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으로 최초 지정·고시됨에 따라 2021년까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운영비로 편성하여 지원해오던 재단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금은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출연금)에 근거하고 있으며, 재원은 충북교육청과 농협은행과의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임. ○ 충북 도내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우수 학생을 조기 발굴하여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p>첨 부 자 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인원 및 조직현황 등) 3. 출연사업계획서

1-①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경영평가) 해당없음
- (재정사업평가 및 감사결과) 해당없음

2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금회 상정 의안인 「2022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은 2022년 9월 19일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으로 최초 지정·고시됨에 따라 그동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운영비로 편성하여 지원한 재단의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하려는 것임.

○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금은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출연금)에 근거하고 있으며, 재원은 충청북도교육청과 농협은행과의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로 2021년 금고 약정시 향후 4년간 협력사업비*는 총 719,000천원임.

* 향후 4년간 협력사업비: **2022년 179,000천원**, 2023년 180,000천원
2024년 180,000천원, 2025년 180,000천원

○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은 2000년 12월 충북교육장학재단 설립 이전부터 충청북도교육청과 농협은행과의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로 충북 도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2022년 4월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2년 6월 재단 명칭 변경(충북교육장학재단→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사업 확대, 수혜자 범위 확대를 반영한 정관 변경 등 기존의 한정된 장학금 사업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중임.

○ 충북 도내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우수 학생을 조기 발굴하여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출연 승인을 건의드립니다.

③ 출연금 검토

(단위:천원)

내역	2021년 예산액 (최종)* (C)	2022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액 (B-C)
재단법인 충북교육 성장지원재단 출연	150,000	179,000	179,000	-	29,000

*2021년 예산액: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 충북교육장학재단지원(운영비)

④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

사업목적성 명확성	출연의성 타당성	유충 보상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성 시급성	투자대비성 효과성	재원분담성 절성
여	여	부	여	여	여	여

1-② 출연 기관현황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근거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043-290-2783 홈페이지: www.cbe.go.kr			
소재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법인등록번호		150122-0002411			
연혁	(설립) 2000. 12. 29.(충북교육장학재단) (설립조례 제정) 2022. 4. 8. (재단명칭 변경) 2022. 6. 17. (출연기관 고시) 2022. 9. 19.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22.10.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0명		0명(10명)		0명		
임원 ('22.10. 기준)	직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	이광우	충북교육청 교육국장		재임기간		
	상임이사	박을석	충북교육청 유아특수복지과장		재임기간		
	이사	장원숙	충북교육청 학교혁신과장		재임기간		
	이사	최길수	충북교육청 미래인재과장		재임기간		
	이사	이범모	충북교육청 학교자치과장		재임기간		
	이사	손기준	충북교육청 교원인사과장		재임기간		
	이사	나광수	충북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장		재임기간		
	이사	안병대	충북교육청 행정과장		재임기간		
	감사	한명수	충북교육청 재무과장		재임기간		
	감사	이찬동	충북교육청 예산과장		재임기간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목적: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 육성 ○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조성·관리 사업 -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 국제교류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 저소득층학생 지원 사업 - 충청북도교육감이 위임·위탁하는 사업 -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자본금(출자기관) 또는 기본재산(출연기관)	2,107백만원 (직전연도말 기준)			교육비특별회계 출자출연액/지분	194백만원 / 9.2%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재무현황 (백만원) '21.12.31기준	자산	2,337 (자산 총액)
	예산액	293	379	383		부채	39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150	150	0		자본	2,298 (자본금 총액)
2021년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96			155		41	

1-③ 출연 사업계획서

사업명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	구분	출자	
주관부서	유아특수복지과		출연	179,000천원

□ 목적 및 필요성

- 충북 도내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우수 인재를 조기 발굴하여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 육성

□ 출연개요

- 사업명: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
- 사업기간 및 출연액 (단위: 천원)

사업명	출연연도	사업기간	출연액	비고
재단법인 충북교육 성장지원재단 출연	2022년	2022. 11. ~ 12.	179,000	

- 주요내용: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사업비*

*사업비: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금 조성·관리 사업,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국제교류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저소득층학생 지원 사업, 충청북도 교육감이 위임·위탁하는 사업,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출연근거: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출연금)

□ 연도별 지원내역(충청북도교육청 금고 약정사항)

-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지원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계
운영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600,000

*운영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 충북교육장학재단지원(운영비)

- 2022년~2025년 약정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계
출연금*	179,000	180,000	180,000	180,000	719,000

*출연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출연(출연금)

□ 기대효과

- 충북 도내 우수학생 조기발굴 및 성장 지원
- 다양하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실현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은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충북 도내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우수 학생을 조기 발굴하여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준비중임.
- 출연 미 승인시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급되었던 장학금 미지급 및 준비중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출연은 꼭 승인되어야 함.

관련법령 발취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장학금 조성·관리 사업
3.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4. 국제교류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5. 저소득층학생 지원 사업
6. 충청북도교육감이 위임·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출연금) 교육감은 재단의 목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